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7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이상휘・이만희・김태호

임이자 · 서일준 · 임종득

김정재 · 김상욱 · 우재준

구자근 • 박준태 • 박성훈

박상웅ㆍ김 건ㆍ권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

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10조 및 제13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 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등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외곽면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법률 제20029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①
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	
고 <u>시행할 수 있다</u> .	<u>시행하여야 한다</u> .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u>수 있다.</u>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
	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
	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u>것으로 볼 수 있다.</u>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② 국가등은 정주여건을 개선 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 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토 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 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